

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9. 2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2. 9. 2

다. 상정일자 : 제105회 사하구의회(정례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2002. 9. 7)

2. 제안설명요지(김진문 문화회관장)

가. 제안사유

- 본청과 사업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.

나. 주요내용

- 조항 신설
 - ▷ 제20조(권한의 위임)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징수 등에 따른 제반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.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)
-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 관한 조례
제5조(사용허가)~ 제18조(회관회원제 운영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이번 조례 개정안은 을숙도 문화회관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에 따른 제반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이 을숙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2002. 5월 조례 제정검토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누락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개정안은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